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217-571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4. 8. 28.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태 료 : 5,4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을 위한 무료채팅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8. 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7. ~ '24. 5. 2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을 위한 무료 채팅 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2. 8. 18.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 해당 수치는 다크웹에 유출된 회원 데이터로, 피심인은 사고 이후 '22. 8. 18. 웹서버 및 DB 삭제 조치하여 전체 회원 데이터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음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2. 8. 2.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이트(이하 '다크웹')에 피심인이 운영중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1,746건을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다.

해커가 다크웹에 업로드한 파일은 피심인의 개인정보 파일() 일부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시는 '21. 3. 8.로 확인된다.

피심인은 '21. 3. 8. ~ '22. 8. 18. 동안 웹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권한 없는 자가 디렉터리 및 .sql(다크웹 업로드) 등 개인정보 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였다.

피심인은 사고 이후 '22. 8. 18. 해당 웹서버 및 DB를 삭제하였으며, '22. 10. 16. 신규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이 유출되었다.
 - * 아이디, 비밀번호(SHA-256 암호화), 이메일

[※] 피심인은 '22. 10. 16.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신규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중으로 소명하였음

2) (유출 인지 및 대응) 유출 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하였다.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2. 8. 2.	16:28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메일 수신		
'22. 8. 2.	19:13	개인정보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22. 8. 2.	20:00	웹서버 운영 중지 및 사이트 폐쇄		
'22. 8. 18.	16:28	웹서버 및 사이트()의 파일 삭제		
'24. 5. 31.	15:45	개인정보 유출 통지(이메일)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3. 8. ~ '22. 8. 18. 동안 웹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권한 없는 자가 디렉터리 및 .sql(다크웹 업로드) 등 개인정보 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8.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내 메일을 수신하여 다크웹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4. 5. 31.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5. 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6. 3.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²)(이하'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3)(이하'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

²⁾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21. 3. 8. ~ '22. 8. 18. 동안 웹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권한 없는 자가 디렉터리 및 .sql(다크웹 업로드) 등 개인정보 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22. 8. 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4. 5. 31.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舊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안전조치의무	舊 보호법 §29	§48의2① 제2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행위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4⑤)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4⑨)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舊 보호법 §39의4①	舊 시행령 §48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위반행위(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4)(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 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l 번 제 75주	600	1,200	2,400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 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 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각각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정)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소(小)기업인 경우(30% 이내)',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티	l료	산출나	으	>
---	----	----	-----	---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안전조치의무 (접근통제)	600만 원	90만원	420만원	270만원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특례 (통지 지연)	600만 원	90만원	420만원	270만원
계				540만원

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5)」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6」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⁶⁾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한 자 순번 명칭 처분일자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내용 舊 보호법*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270만 원 제29조 (접근통제) 2024. 8. 28. 1 舊 보호법 개인정보 과태료 270만 원 제39조의4제1항 유출통지·신고 특례

* 舊 보호법 :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2024년 8월 28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제12호의3, 제 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 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8월 28일

- 위원장 김진욱 (서명)
- 위 원 김진환 (서명)
- 위 원 박상희 (서명)